

1. 개정이유

현행 규제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중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은 설비는 법정 이격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해야 함. 이는 폭발위험 유발 설비별 일률적인 이격거리로서 기술적 신뢰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한정된 부지 내에서 거리 이격은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장애요인이 되었음. 이를 개선하고자,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은 충전설비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非방폭형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를 폭발위험 유발 설비별로 일률적으로 이격하도록 정한 것을 현장의 여건에 따라 폭발위험 범위 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함

[안 별표13 VI 아 2), 같은 목 4) 가), 같은 목 5) 가) (1), (2)]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3 VI 제1호아목2) 후단 중 “충전공지는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을 최대한 펼친 끝 부분에서 1m 이상 떨어지도록”을 “폭발위험장소(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폭발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장소로서 0종, 1종 및 2종의 위험장소의 범위를 말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 외의 장소에 두고, 충전공지를 고정주유설비(제1석유류를 취급하는 고정주유설비만 해당한다)가 설치된 지면보다 10cm 이상 높게”로 하고, 같은 목 4)가) 단서 후단 중 “고정주유설비(제1석유류를 취급하는 고정주유설비만 해당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의 중심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, 전용탱크(제1석유류를 취급하는 전용탱크만 해당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 주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, 전용탱크 통기관 끝부분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를 “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별표 13 VI 제1호아목5)가) 및 나) 외의 부분 중 “(coupler), 인렛(inlet)”을 “(coupler)”로 하고, 같은 5) 가) 단서 “충전설비의 전원공급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사무소 내부 또는 충전기기 주변에 설치하고, 충

전기기를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, 전용탱크 주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, 전용탱크 통기관 끝부분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를 “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”로 하며, 같은 5)가)에 (1) 및 (2)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

(1) 충전기기의 전원공급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사무소 내부 또는 충전기기 주변에 설치할 것

(2) 충전기기를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

같은 5) 나) 중 “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”을 “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 13] VI. 건축물 등의 구조 제1호아목 1) (생 략) 2)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를 V. 건축물 등의 제한 등의 제 1호 각 목의 건축물 밖에 설치 하는 경우 <u>충전공지는 고정주 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의 주 유관을 최대한 펼친 끝 부분에 서 1m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</u>	[별표 13] VI. 건축물 등의 구조 제1호아목 1) (현행과 같음) 2) ----- ----- ----- ----- <u>폭발위험장소(「산업표 준화법」 제12조에 따른 한국 산업표준에 정한 폭발성 가스 에 의한 폭발위험장소로서 0 종, 1종 및 2종의 위험장소의 범위를 말한다. 이하 이 목에 서 같다) 외의 장소에 두고, 충 전공지를 고정주유설비(제1석 유류를 취급하는 고정주유설 비만 해당한다)가 설치된 지면 보다 10cm 이상 높게 할 것</u>
3) (생 략) 4)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전 력공급설비[전기자동차에 전 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 로서 전력량계, 인입구(引入 口) 배선, 분전반 및 배선용 차	3) (현행과 같음) 4) ----- ----- ----- -----

단기 등을 말한다]는 다음의
기준에 적합할 것

가) 분전반은 방폭성능을 갖추
것. 다만, 분전반을 고정주
유설비(제1석유류를 취급하
는 고정주유설비만 해당하
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의
중심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,
전용탱크(제1석유류를 취급
하는 전용탱크만 해당한다.
이하 이 목에서 같다) 주입
구의 중심선으로부터 4미터
이상, 전용탱크 통기관 끝부
분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
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는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
다.

나) ~ 라) (생략)

5) 충전기기와 인터페이스[충전
기지에서 전기자동차에 전기
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결하는
커플러(coupler), 인렛(inlet), 케
이블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]
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
가) 충전기기는 방폭성능을 갖
출 것. 다만, 충전설비의 전

가) -----
----- 폭발위험
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
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추
지 아니할 수 있다.

나) ~ 라) (현행과 같음)

5) -----

커플러(coupler), -----

가) -----
-----, 다음의 기준에 모

<u>원공급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사무소 내부 또는 충전기기 주변에 설치하고, 충전기기를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, 전용탱크 주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, 전용탱크 통기관 끝부분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나) 인터페이스의 구성 부품은 「<u>전기용품안전 관리법</u>」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6) (생략)	<u>두 적합한 경우에는 방폭 성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</u> (1) <u>충전기기의 전원공급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사무소 내부 또는 충전기기 주변에 설치할 것</u> (2) <u>충전기기를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</u> 나) ----- <u>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」</u>----- ----- 6) (현행과 같음)
--	---